



기은SG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기은SG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bksgam.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09년 4월 16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5월 4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
|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 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리(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

명 칭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6761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7616	67167	73099	70983	76988

2. 모집예정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으로 모집규모나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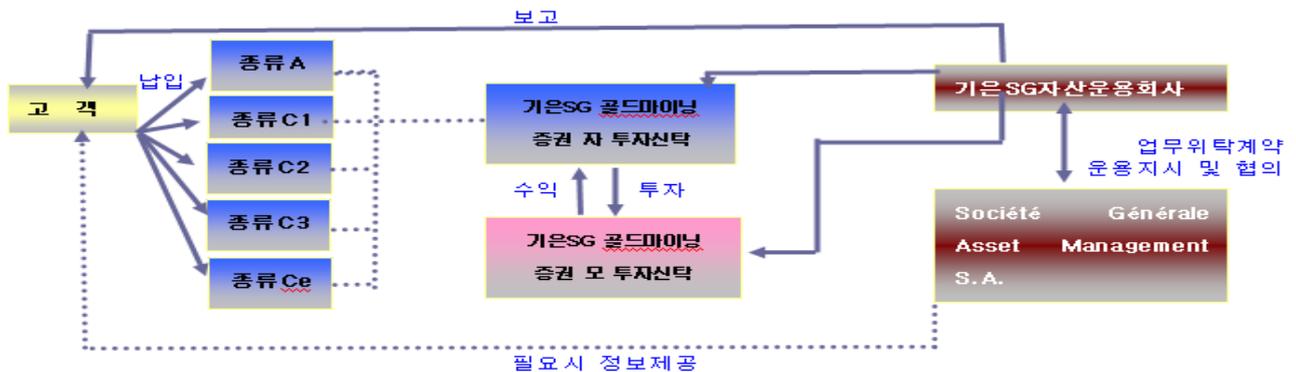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기은SG자산운용(주)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 업무 위탁 운용회사 및 업무위탁 범위

해외위탁운용사 -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업무위탁범위 - 외국통화표시자산(금광업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주문업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2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3.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

(1)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귀금속 등 금광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이 발행예정 또는 발행한 지분증권 및 증권에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9.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1.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12.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외화표시 자산을 포함)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5호본문,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기은SG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sgam.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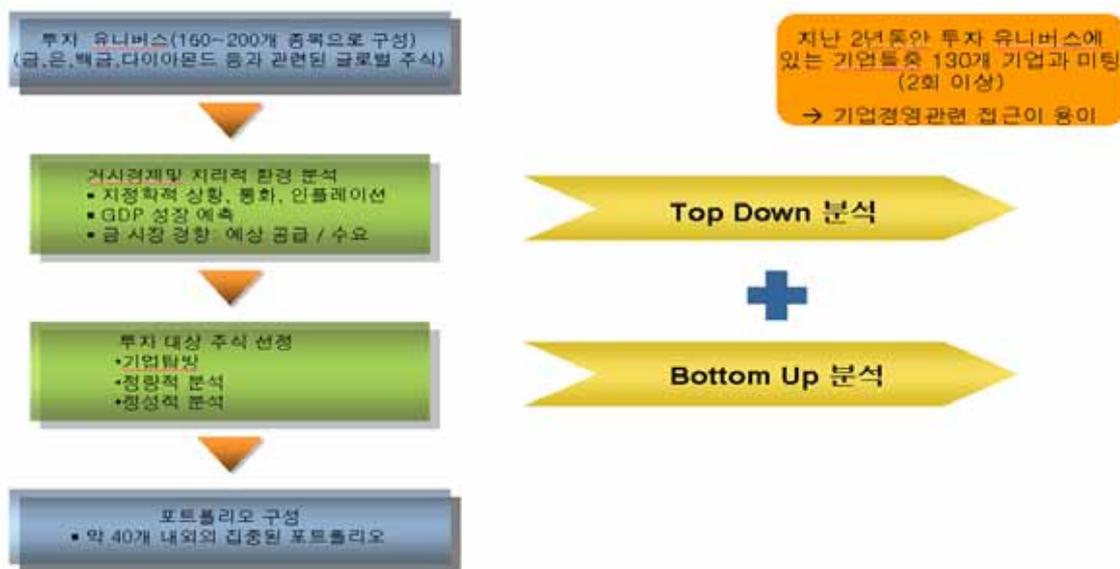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인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투자신탁인 기은SG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자산의 60%이상을 금광업 산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USD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며, USD와 실질 투자 통화간의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의 범위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의 투자는 기은SG자산운용회사의 관계회사이며, Société Générale Group의 일원으로서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SGAM S.A.에서 위탁받아 운용합니다.(해외위탁운용회사 변동 시 기은SG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



* 포트폴리오 구성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유니버스 및 투자종목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의 환헷지 전략은 반드시 모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위험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환매연기사유’ 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오후3시이후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60% 이상인 증권투자신탁 ^{주)}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이상인 경우 ^{주)}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신탁계약상 주식 편입 비율 60% 이상)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초과 ~ 60% 미만인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미만인 경우
3등급	중간위험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 이하인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미만인 경우
4등급	낮은위험	-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원금보존 추구형
5등급	매우낮은위험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MMF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기은SG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유치영	1964	상무	48개	73,739억	-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 2001년 PCA투신 채권운용팀 - 1990년 국민투신 투자공학팀

* 이 투자신탁의 국내운용은 SI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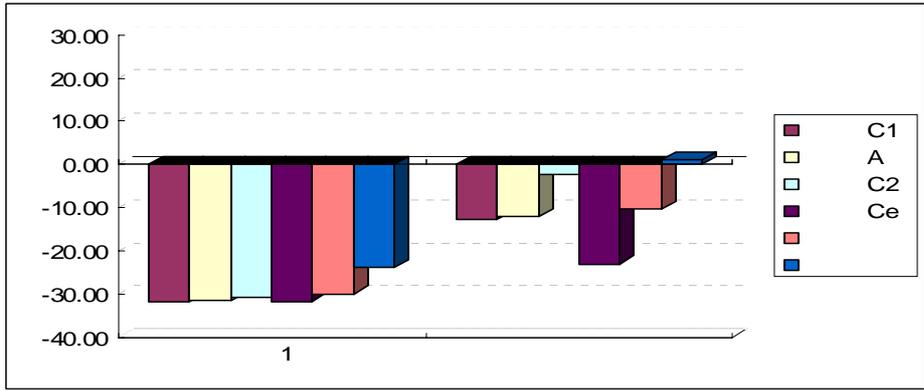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설정일 이후
	08.01.31 ~ 09.01.30	07.04.13 ~ 09.01.30
종류 A	-31.44	-12.10
종류 C1	-32.00	-12.78
종류 C2	-30.74	-2.21
종류 Ce	-31.71	-23.05
투자신탁전체	-29.96	-10.28
비교지수	-23.96	0.99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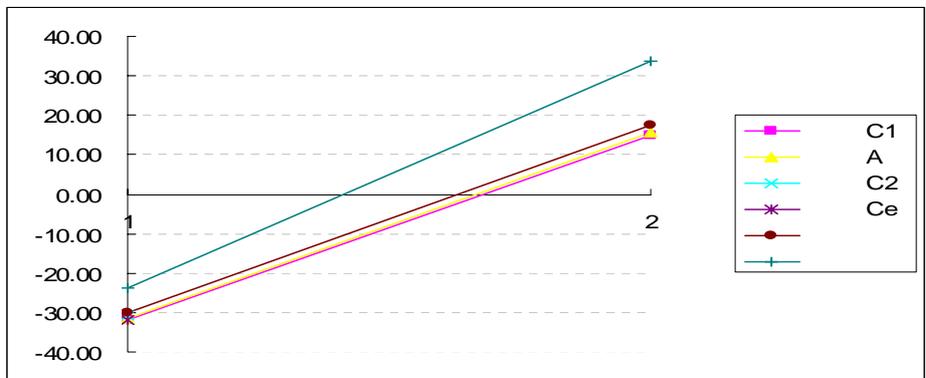
(2) 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08.01.31 ~ 09.01.30	07.04.13 ~ 08.01.30
종류 A	-31.44	15.56
종류 C1	-32.00	14.88
종류 C2	-30.74	
종류 Ce	-31.71	
투자신탁전체	-29.96	17.38
비교지수	-23.96	33.86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임.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판매회사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부과기준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1%	해당사항 없음				납입금액

환매수수료	70%	해당사항 없음	30 일미만 이익금
	30%	해당사항 없음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
	해당사항 없음	70%	90 일 미만 이익금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보수구조						
수익자의 자격	선취판 매수수 료 있는 경우	선취판매 수수료 없는경우	웹어카운트 고객	납입금액 100 억이상가입자	온라인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1.00					매 3 개월 후금
판매회사 보수	1.00	1.80	0.00	0.10	1.40	
신탁업자 보수	0.07					
일반사무관리보수	0.02					
기타 비용	0.0030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2.0930	2.8929	1.0900	1.21	2.4928	-
합성 총보수 및 비용(TER)	2.1961	2.9487	1.0902	1.21	2.4949	
매매수수료 비용	0.2654	0.1469	0.0006	0.2654	0.0123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매매수수료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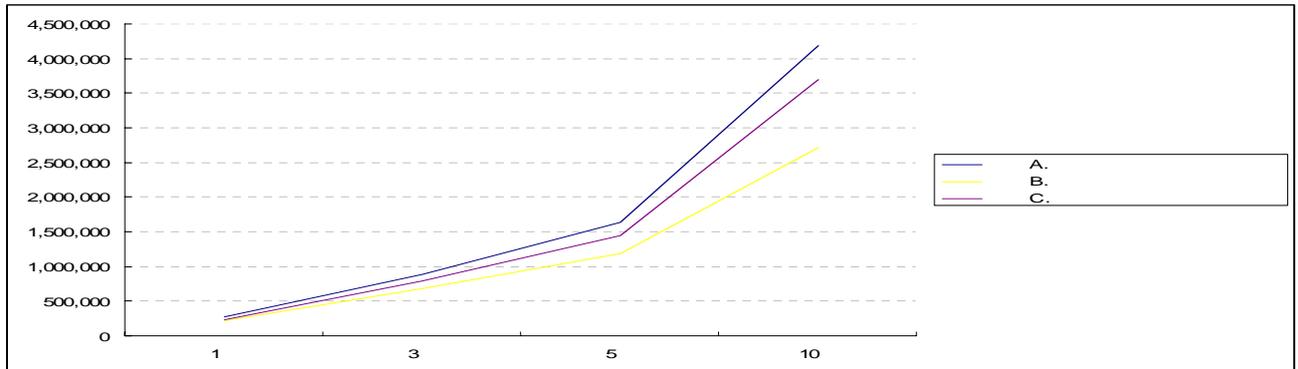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1	3	5	10
A		219,766	726,875	1,335,634	3,409,289
	()	230,587	762,665	1,401,398	3,577,156
C1		303,757	1,004,677	1,846,095	4,712,274

	()	309,618	1,024,062	1,881,713	4,803,191
C2		114,450	378,543	695,573	1,775,495
	()	114,475	378,626	695,725	1,775,883
C3		124,025	390,989	685,316	1,559,973
	()	124,025	390,989	685,316	1,559,973
C-e		261,743	865,714	1,590,749	4,060,487
	()	261,968	866,458	1,592,116	4,063,977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0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세제혜택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익자에 대한 일반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이 평가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법제9조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
- ②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 ③ 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투자신탁 수익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이하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단, 모자형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모두투자신탁의 수익자로 봄.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sgam.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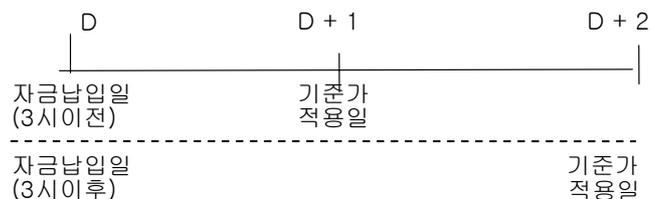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C1: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C2: 랩어카운트 고객
- 종류C3: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투자자
- 종류Ce: 온라인(On-Line)전용 가입자를 위한 수익증권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④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⑤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입니다.

나. 환매

①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③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A	종류 C1,C2,C3,Ce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환매시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④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⑥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6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7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⑦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가)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⑧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2기 08.10.12	제1기 08.4.12
운용자산	0	0
증권	17,679,518,489	49,715,722,024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416,877,364	674,265,448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18,096,395,853	50,389,987,472
운용부채	262,138,782	648,061,440
기타부채	0	0
부채총계	262,138,782	648,061,440
원본	24,028,316,054	42,937,751,696
수익조정금	6,442,999,509	0
이익잉여금	-12,636,810,333	6,804,174,336
자본총계	17,834,505,230	49,741,926,032
손익계산서		
항 목	2 08.04.13~08.10.12	1 07.04.13~08.04.12
운용수익	-14,294,355,793	11,485,241,595
이자수익	11,494,223	20,957,256
배당수익	6,793,670,713	0
매매/평가수익(손)	-22,121,167,285	11,416,327,772
기타 수익	1,021,646,556	47,956,567
운용비용	13,372,599,501	12,972,481
관련회사 보수	915,754	1,980,000
매매수수료	44,556	53,536
기타비용	13,371,639,191	10,938,945
당기순이익	-15,318,547,388	11,472,269,114
매매회전율	0	0